

광명시 지방 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

제정 2000. 12. 29 규칙 제 782호
개정 2008. 6. 16 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 2016. 2. 26 규칙 제1123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
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
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 2018. 7. 31 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수당규정”이라 한다)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,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2조(근속연수의 계산)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(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할 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정직·휴직·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3조(지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·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, 지급신청기간,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4조(지급신청)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5조(지급심사대상)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6조(지급심사기준)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·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1.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
2.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
3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
제7조(지급절차)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, 지급장소,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8조(수령권 승계)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,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공무원연금법」의 관련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2. 26 규칙 제1123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
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6. 2. 26>

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

소 속		공무원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직 <input type="checkbox"/> 별정직	직 종· 상당계급	(호봉)					
성 명	(한글)	생년월일								
	(한자)	주 소	□□□□□□							
전 화 번 호 (자 택)		근 속 기 간	년 월	최초임용일	년 월 일					
				근무상한 연 월 일	년 월 일					
수당청구액			산출내역							
<p>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>붙 임 : 자진퇴직원 1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인 (인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>확 인</td> <td>인사담당</td> <td>(인)</td> <td>연금담당</td> <td>(인)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소속기관의 장) (인)</p> <p>광 명 시 장 귀하</p>						확 인	인사담당	(인)	연금담당	(인)
확 인	인사담당	(인)	연금담당	(인)						

주) 자필로 기재하고 □는 v표를 하되, 굵은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자 진 퇴 직 원

소 속

직 급

성 명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위 원 인 (인)

광 명 시 장 귀하

※ 반드시 자필로 기재